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513
----------	------

발의연월일 : 2025. 1. 15.

발 의 자 : 허 영 · 윤준병 · 박상혁
주철현 · 박민규 · 임호선
진성준 · 전재수 · 한민수
정일영 · 조계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가맹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4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항 중 “제110조 및 제115조”를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제3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p>	<p>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 . 이 경우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제3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본다.</p>